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760호 2022. 1. 6.(목)

곤	7
0	

- 사천시 공고 제19호 사천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 1
- 사천시 공고 제20호 사천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 2
- 사천시 공고 제21호 사천시 조례제정과 개폐청구권자 총수 공표 ------ 4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 3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

%]					
외					
1 '					
□ ¬1					
담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831-2215 / FAX 831-6012

제760호

사천시 공고 제19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제9조 및 「사천시 주민투표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1월 6일

사 천 시 장

주 민 투	·표 청구권자 총	청구에 필요한	비고	
합 계	내국인	외국인	연서 주민수	
93,130	93,040	90	10,348	청구권자 총수의 1 <i>9</i> 이상

제760호

사천시 공고 제20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22 년도 사천시장 및 사천시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1월 6일

사 천 시 장

■ 시장

_	구 분		주민소환투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읍·면·동별	주민소환투표
	1 正		청구권자 총수	行[5/100]	최소서명인 수	청구조건
	계		93,117			
사	천	음	14,828		932	주민소환투표 청
정	동	면	10,874		932	,
사	남	면	11,594		932	구권자 총수의
용	현	면	6,211		932	15/100이상의 서
축	동	면	1,484		223	명을 받되,
곤	ું [‡]	면	3,138		471	
곤	명	면	2,634	13,968	396	5개 읍·면·동
서	王	면	3,278	13,900	492	
동	서	동	5,719		858	이상에서 읍 · 면
선	구	동	4,417		663	·동별 각각 최
동 /	서 금	동	5,408		812	소서명인 수 이
벌	용	동	13,156		932	상의 서명을 받
향	촌	동	5,883		883	아야 함
남	야	동	4,493		674	~r~r 섬

사 천 시 궁 보

제760호

■ 시의회 의원

시 · 규	자치단체별 시·군 선거구 읍·면·동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수 (20/100)	읍·면· 동별 최소서명인 수	주민투표 청구요건
A A		93,117				
	가선거구	계	43,507	8,702		다세 사기가 이어 즈미토회
		사 천 읍	14,828		436	당해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정동면	10,874		436	20/100이상의 서명을 받되, 2개 읍·면 이상에서 읍·
		사남면	11,594		436	면별 각각 최소서명인 수
		용현면	6,211		436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나선거구	계	10,534	2,107		다케 시키크 이이 즈미샤취
		축 동 면	1,484		106	당해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곤 양 면	3,138	_	106	20/100이상의 서명을 받되, 2개 면 이상에서 면별 각각
사천시		곤 명 면	2,634		106	최소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
		서 포 면	3,278		106	을 받아야 함
	다선거구	계	14,629	2,926		당해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
		동 서 동	5,719		147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의 서명을 받되,
		선 구 동	4,417		147	1개 동 이상에서 동별 각각
		남 양 동	4,493		147	최소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 을 받아야 함
	라선거구	계	24,447	4,890		당해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
		동서금동	5,408		245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의 서명을 받되,
		벌 용 동	13,156		245	1개 동 이상에서 동별 각각 최소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
		향촌동	5,883		245	을 받아야 함

제760호

사천시 공고 제21호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

(2022. 1. 12일까지 적용) 「지방자치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사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제2조

(2022. 1. 13일부터 적용)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 제5조 및 「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3조

위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1월 6일

사 천 시 장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	자 총수	청구에 필요한	0 74	ы ¬
합 계	내국인	외국인	연서 주민수	요 건	비고
93,117	93,040	77	1,863	청구권자(19세 이상) 총수의 1 <i>/</i> 50 이상	2022. 1. 12. 까지
94,122	94,045	77	1,345	청구권자(18세 이상) 총수의 1 <i>/</i> 70 이상	2022. 1. 13. 부터

제760호

사천시 공고 제3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1월6일사천시장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영업자의 규제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례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감면 목적 등이 명확한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면 목적 등이 명확한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생략(안 제24조)

제760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3211,

FAX: 831-6033)

제760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O 주 소:
- O 생 년 월 일:
- O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제760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를 "제1항에도"로, "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수수료"를 "수수료"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별표 6 제2호나목의 과태료란 중 "11일째부터"를 "31일째부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수수료) ①・② (생 략)	제24조(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
	승 []
③ 시장은 <u>제1항에</u> 불구하고 다	③ <u>제1항에도</u>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	수수료
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
	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
	는 광고물
<u><신 설></u>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